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49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박희승 · 박용갑 · 윤준병
이원택 · 오세희 · 이춘석
김윤덕 · 소병훈 · 정준호
박해철 · 김남근 · 서영교
박홍배 · 임미애 · 윤후덕
김준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
로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제6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u> <u>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임</u> <u>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u> <u>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u> <u>료를 부과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u> <u>징수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 ----- ----- -----.